

한국주거학회 연구윤리규정

2008. 11. 28 제정 2015. 12. 19. 개정
2017. 06. 23 개정 2022. 02. 17. 개정

제 1 장 전문 및 목적

제 1 조 목적

본 연구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이라 약칭함)은 본 학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약칭함)이 연구과정에서 지켜야 할 윤리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것이다.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주거학회 회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연구관련 윤리규정

제 1 조 적용대상 및 범위

이 규정은 한국주거학회 모든 회원에 대하여 적용하며, 연구수행 및 논문발표 시 연구윤리 확립과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따른다.

제 2 조 연구부정행위의 규정

- ①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 목적과 무관하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내용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표시행위 등 연구의 진실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자료, 연구과정, 연구결과를 조작하여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이미 발표되거나 출간된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그대로 발췌 사용하거나 다른 형태로 변화시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자기표절”이라 함은 저자 자신의 과거 출판물 등을 사용하면서 그 출처를 밝히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가령, 동일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논문을 이미 다른 학술지에 발표한 경우 이미 출간된 논문에서 사용한 문단, 표, 그림 등을 적절한 인용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자기표절로 간주할 수 있다.
 5. “이중게재”라 함은 연구자 본인의 동일한 연구 결과를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출간하는 경우 또는 연구데이터가 같고 대부분의 문장이 같은 경우를 말한다. 학위논문의 경우 명확하게 논문출처를 밝힌다.
 6.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②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③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 3 조 윤리규정 서약

한국주거학회의 회원은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기존 회원은 윤리규정 발효시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3 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제 1 조 역할 및 기능

위원회는 한국주거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의 모든 회원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조사에 관한 사항
3. 제보자 보호와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4.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 연구진실성 검증, 검증결과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2 조 구성

-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② 연구윤리위원장은 회장이 선임하고 상임이사회에서 추인한다.
- ③ 연구윤리위원은 연구담당 부회장과 편집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여 7인 내외로 연구윤리위원장이 선임하고, 상임이사회에서 추인한다.
- ④ 연구윤리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 3 조 회의

-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 ③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④ 회의는 비공개로 원칙으로 한다.
- ⑤ 조사 대상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해당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 4 조 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 ①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증거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윤리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며, 혐의 사실을 인정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④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⑤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 4 장 연구진실성 검증 및 심의

제 1 조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 ①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그 회원으로 하여금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제보자는 한국주거학회 사무국에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명(또는 연구과제명)과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논문심사자는 심사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의심이 가는 경우에 확고한 증거가 없더라도 논문편집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 2 조 부정행위 조사

- ①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부정행위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본 학회 회장과 협의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예비조사는 논문편집위원회에서 실시한다.
- ③ 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 ④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기관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 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 3 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와 비밀엄수

-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접, 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②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 4 조 이의제기 및 진술기회의 보장

- ①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반론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 ②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5 조 판정

- ① 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반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과 절차를 확정한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피조사 사실 과 관련한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임을 확인하는 판정을 한다.

제 5 장 출판윤리

출판윤리는 한국학술단체 총연합회의 연구윤리 지침에 따른다. 상세한 내용은 연구재단 홈페이지의 <https://www.cre.re.kr/>에서 제공하는 다음의 가이드라인을 참조한다.

[2020] 과학기술 분야 학회 출판윤리 길잡이(학회용)

제 6 장 징계절차 및 내용

제 1 조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 ① 위원회는 연구윤리의 위반내용을 조사 후 연구윤리 위반이 확인된 경우 그 내용을 회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회장은 위원회에서 보고받은 내용을 기초로 이사회에 결의를 통해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 ② 연구부정행위 확인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1. 연구부정논문의 게재취소
 2. 연구부정논문의 게재취소 사실을 학회 홈페이지와 논문집을 통하여 공지
 3. 경고
 4. 회원자격 박탈 또는 정지
 5. 관계기관에의 통보
 6. 기타 적절한 조치
- ③ 제②항 제2호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수록 권(호),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 제②항 제4호의 박탈 또는 정지 기간은 부정행위 과중에 따라 위원회에서 정한다.
- ⑤ 위원회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회원자격을 박탈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 2 조 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통지한다.

제 3 조 재조사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4장 제2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 4 조 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5 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 ①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② 판정이 끝난 이후 결과는 학회 상임이사회에 보고되어야 하며,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위원회의 결의로 그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 6 조 연구윤리규정의 수정

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1. 본 규정은 2008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1. 본 규정은 2015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1. 본 규정은 2017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1. 본 규정은 2022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